

학술정보의 전자화와 시장화(市場化)

- 저작권제도에서의 시점(視點) -

과학문화연구원 이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고문

김 종 희

현재 학술정보에 있어서 저작권문제로는 On line Journal에 관한 것과 Data Base에 관한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전통적인 학술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 변혁의 요인은 첫째로, 학술정보의 전자화이며, 둘째로는, 학술정보의 시장화(市場化)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동향과 문제점 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관한 몇 가지 문헌을 조사 번역하여 편집하였다.

1. 저작물로서의 학술정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선 학술정보와 저작권제도와와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 학술정보는 논문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학술정보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저작권제도에 관련이 있다. 첫째는, 그 자체의 저작물성(著作物性)에 있고, 둘째는, 저작권의 권리 제한이 있다. 전자는 학술정보가 저작권을 가질 것인가 아닌 가이며, 후자는 그들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이 요구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1. 저작권제도에서의 시점(視點)

1) 저작물성

학술정보에 대해서는 베른 조약(Treaty of Berne: 저작권제도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이것을 「문학의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베른조약의 사무국)이 발행한 「베른조약축조해설(逐條解說)」은 「학술의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내용의 학술성 때문이 아니라 그 저작물이 서적이고 영화이기 때문

이다. 저작물의 내용은 보호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물의 내용은 보호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기술한 점이며 이것은 학술연구에 있어서 평가기준과는 다르다.

★베른조약: 【Treaty of Berne】 국제저작권협회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1886년에 체결된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인 조약

2) 권리제한

권리제한은 학술연구의 특성이 되는 정보의 공유나 상호참조에 있어서 비판적(Critical)인 의미를 갖는다.

베른조약은 학술정보에 대한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인용(引用)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라면 「자유라고」 하여 권리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1996년에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베른조약의 전자화판)은 그 조약 앞의 문장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정보의 입수권리 등 공공의 이익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를 인정하여」라고 표시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문장이 명기되었으며, 더욱이 「연구」라는 공익(公益)이 기재된 것은 처음이다.

1-2. 학술연구에서의 시점

1) Authorship

학술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상당하는 개념으로 「Authorship」이 있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생물의학지 투고에 관한 통일규정」은 Authorship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연구의 착상이나 디자인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

② 논문의 집필 혹은 원고 내용에 대한 중요한 지적개정과 수정

③ 출판 원고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장이었던 A. Relman은 세 가지 조건 외에 ④번째로 실험 실시자를 추가하였다.¹⁾

이러한 조건을 저작권법에 표시된 정의(定義)와 비교해보면 ①, ③ 및 ④는 저작권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른조약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을 「표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에 따르면 「착상: 着想」이나 「디자인: design」은 구상(idea)일 뿐 표현은 아니며 「데이터: data」 자체도 사실(事實)일 뿐 표현은 아니다. 또한 「실험」은 표현의 사전행위일 뿐 표현은 아니다.

더욱이 ②의 조건에 대해서도 「논문의 집필자」는 저작자의 정의와는 중복되지만 원고내용의 지적(知的)개정이나 수정이 모든 저작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유영역(公有領域)에 있는 고전(古典)의 훈고(訓詁: annotate)나 주석(注釋)에 대해서는 교과서 상의 표현으로는 1문자, 1프레이즈(phrase)의 개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은 이것을 저작물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공유성 및 상호 참조성

학술정보의 사용환경을 보면 저작권제도에 관계하는 특성은 그 공유성과 상호참조성에 있다. 공유성에 대하여 문화인류학자인 B. Latour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복사한 문헌에 밑줄(underline)을 긋고 그곳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논문을 잘라내어 동료들과 교환을 한다. 따라서 그 결과 원노문이나 원학술지의 모양을 흐트러트리게 된다. 이것이 연구자의 창조적인 행위의 실태다.」 따라서 이것이 연구정보의 공유화의 뜻이다. 그러나 Latour가 기술한 제행위는 저작권에서 보면 저작자인격권(著作者人格權)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저작권제도와 학술정보의 공유나 상호참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즉,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참조성은 연구자의 평가시스템과 결부되어 있

다. 연구자의 업적은 발표논문의 수나 혹은 피인용회수로 평가된다. 특히 Science Citation Index의 보급과 더불어 인용회수에 의한 평가가 일반화되었다. 연구자는 자기 논문의 인용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널리 많은 복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D. Schauder의 조사에 의하면 연구자의 78%는 이용자에 의한 무료복사를 시인하고 있다.²⁾ 학술정보의 복사분쟁에 관한 미국의 판례[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1994)]는 「연구자는 복사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더욱이 많은 학회는 학회지에 투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불하는 관행은 없고 오히려 투고자에게 게재료나 투고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연구자에게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의식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학술정보의 Authoship에는 인격적인 요소는 포함되지만 경제적인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학회의 역할

학술정보는 클럽(Club;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재산이다. 즉, 특정집단 내에 공유되어 있다. 이것을 B. Kahin은 연구자는 닫힌 집단 안에서 「저자 즉 독자」(authors as well as audience)라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회는 이와 같은 집단을 조직하여 여기서 생성되어 소비되는 학술정보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시점에서 보면 저자의 공표권을 무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논문에 대해서 표현이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읽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시점에서 보면 저자의 동일성보존권을 뺏고 있다. 공표권이나 동일성보존권은 저작자인격권의 요소이므로 학회는 저작자인격권을 크게 억제하고 있는 것이된다. 학회가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 서로가 「저자 즉 독자」 관계를 갖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로 많은 학회(특히 이공계, 의학계)는 회원인 연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회는 photo·copy에 대해서는 권리집중기관[미국의 경우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일본은 학술저작

권협회] 등에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학회의 저작권정책은 예를 들면 다음의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가 전형적인 예이다.

① 개인적인 수업목적을 위한 복사는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이거나 또 Hard copy거나 Digital copy거나 무상으로 인정받는다.

② 단, 복사가 영리를 위해서 또 상업적인 우위성을 갖기 위하여 작성하거나 배포될 경우에는 ①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①을 인정하는 조건은 복사의 첫면(page 1)에 이 저작권 표시를 붙이면 그 복사는 전문인용 되었다는 것이 된다.

인문계에 있어서도 학회나 출판사가 제시하는 규정은 거의 같다. 더욱이 일본문학 자료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저작권과는 별도로 소유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복제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저작물(예, 출판물)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 즉 독자」라는 상호관계는 인정받지 못한다. 당연하지만 재래의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유통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생산자를 소비자보다도 상위에 두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회는 묵시적이기는 하나 행동에 따라 전통적인 제도에 이의를 제의한 것으로 된다.

2. 저작물의 전자화

2-1. 전자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전통적인 종이 미디어의 환경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통은 저작자 자신이 조정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사장치를 저작자가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배는 첫째로 저작자가 유통업자(출판사)를 관리하며 그 출판사가 인쇄회사를 관리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독자는 복사장치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증되어 왔다.

전자미디어의 환경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대폭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복사장치를 독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조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환경변화는 저작권에 관한 제도나 관리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사적사용(私的使用)의 폐지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복사를 「사적사용」으로 관리대상외에 두어왔다. 그러나 전자적 환경하에서는 이용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복사장치로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저작자는 이용자의 복사행위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적사용」에 관한 기존의 규정은 개정되었다.

이것은 디지털 녹음-녹화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사용」의 권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이용자는 디지털 녹음화에 대해서는 그 장치나 기록매체를 구입할 때에 일괄 선불형태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2) Access 관리

전통적인 저작권법에 있어서 관리대상은 「복사」의 관리일뿐 「Access」의 관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주요한 목적은 저작물의 복사가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Access」(「읽고」 「수신하는」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적인 환경하에서 저작물에 대한 Access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저작자는 이용자 복사만이 사용하는 것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따라서 「Access」의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작물에 대한 Acces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저작물을 권한이 없는 것에서 격리할 것, 둘째로는, 저작물에 저작권관리정보(예를 들면, ISBN)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새 규정이 설정되었다.

전자(前者)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권한이 없는 것에서 격리하는 기술을 파괴하거나 우회(迂回)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후자(後者)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정보의 개찬(글자나 글귀를 고침)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WIPO 저작권조약(Beren 조약의 전자화판)에서 실현하였다.

3) 전송의 권리화(電送의 權利化)

저작물의 전자화는 그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의 유통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유통방식을 가져왔다. 종이미디어(Package형 media)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통은 「move」의 모양이었다. 즉, 저작물의 수는 유통할 때마다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의 유통

pattern을 control할 수 있는 rule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WIPO저작권조약에 새권리로 「공중(公衆)에 대한 전달권」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일본법에서는 「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법」으로 제정되었음을 참고로 기술해 둔다.

2-2. 학술정보의 전자화

1) On Line Journal

정보미디어의 전자화에 따라서 연구자는 스스로 출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낮은 원가의 출판기술과 그 출력이 Internet에 의해 배포를 실용화 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On Line Journal이다.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P. Ginsparg는 1991년에 자기의 Server를 사용하여 물리학분야에서 "e-print archives"라는 preprint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³⁾ 이 미디어는 성공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On-Line journal은 학회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천문학회의 "e-APJ"가 있다. 이것은 Astrophysical Journal의 On-Line판이며 자동 Citation을 서비스하고 있다. 즉, 미리 복사를 하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

On-Line journal에 있어서는 인용(引用)이라는 행위가 Link라는 방법에 의해 실현하고 있다. 만일 자유로운 인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자유로운 Link도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ACM은 Link는 「짜 넣기」(저작권법에서 말하는 「2차적 이용」)은 아니고 「인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로운 Link에 대해서는 사업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On-Line journal이라고 하는 Application은 그 연장상(延長上)에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것을 구상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문맥중에는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은 첫째로, 간행물의 품질을 유지할 것, 둘째로, 저작물의 번역권(version)을 확정할 것, 셋째로, 저작물의 이용규정(rule)을 제정할 것, 넷째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등으로 될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도서관은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보다 높은 효용(效用)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도서관의 공동이용시스템으로서는 이미 시행되었으며 실제로 가동이 시작되었으나 문제는 저작권

처리에 대해 권리자(즉 학회)의 의견이 다양하며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저작권법은 도서관에 대하여 권리의 제한조항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電子的)인 환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효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현행의 제한조항이 전자도서관에 있어서는 속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세기말에 이르러 학술연구는 시장에 있어서도 가치있는 성과를 산출(產出)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학술정보는 공공재산(公共財産)으로 연구자간에 공유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私有財)로서 시장에서도 소비되게 되었다. 즉, 학술정보는 회원간에는 공유되며 또한 회원외는 배타적인 가치를 갖는 클럽의 재산으로 되었다. 이 때 학술정보에 대해서도 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이 증시되게 되었다.

2-3. 기업의 참가

학술분야에 있어서는 정보의 과잉생산·과소소비(過少消費)라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연구자에게 귀에 익은 「발표해라, 아니면 소멸(消滅)해라」하는 경구(警句)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학회가 관행적으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사업자가 여기서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참가하는 예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업자는 정보의 과잉생산과 과소소비(過少消費)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서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사업화하고 있다.

이미 1930년대에 UMI가 마이크로사진 분야에서 Licensed Demand Publisher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SDC가 Online Data Base Service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STN International이 세계적 규모의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다수의 기업들이 CD-ROM을 토대로 한 검색서비스를 시행하거나 혹은 사업화하였다. 이들은 혹은 단독으로 혹은 도서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의한 학술정보의 시장화가 실현되었다.

학술정보의 시장화는 시장의 규모가 협소한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이 사업의 과점화(寡占化)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이르러 대규모의 출판사인 Reed사와 Elsevier사가 합병하였으며, 또한

이 Reed-Elsevier사는 Wolter Kluwer사와의 합병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소유해야 할 정보」에 집중하고 「유기적 성장과 흡수」에 의해 발전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구미의 시장감시기관은 Elsevier사의 행동은 본래 있을 수 있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표시하고 있다.

시장이 협소하며 더욱이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학회지의 가격은 매년 상승하며 이 때문에 구입자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Journal of Supercritical Fluids의 구독료는 Elsevier에 흡수되기 전후에는 연간 \$275.00이었던 것이 연간 \$675.00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에서는 연속간행물 구독수 삭감 즉 「Serial Crisis」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출판사는 학술정보의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특권에 대해서도 억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의 판례는 「연구목적이라 할지라도 기업내의 연구자에 의한 photocopy는 공적사용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2-4. 학회의 변질

기업의 학술영역 참가와 병행하여 학회에 의한 학술정보의 사업화도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는 이미 1970년대부터 상업적인 Data Base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학회는 학술정보의 전자화를 개시하여 사업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규모인 학회는 그 자체가 이미 시장(市場)으로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회원수는 8만명이고, IEEE (Institute of Electric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회원수는 8.5만명으로서 더욱이 국제적인 회원을 조직하고 있다.

많은 학회는 학술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경제적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회원의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출판의 전자화를 실현하자는 의도이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학회지의 집중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의 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의 학회저작권협회는 1990년에 설립되었다.

학회의 저작권관리가 철저해짐에 따라 연구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저작물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예; 자기의 WWW에 발표불가). 이 뜻으로는 copy를 관리한다고 하는 학회의 정책이 copy의 자유화를 희망하는 연구자의 의식과 대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학회지의 출판은 학회자체에서 출판하는 경우와 상업출판사가 출판하는 경우가 있으며 쌍방은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다만 쌍방 모두 학회지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학술지를 전자매디어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종이매디어(Paper media)의 형태로 배부하고 있다. 이것을 전자매디어 만으로 한다면 학회지의 발행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자잡지가 상대적으로 비싼 값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화의 장점을 이용자는 완전히 향수(享受)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5. 도서관의 변질

도서관에는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도서관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도서관 등이 있다. 공공적인 도서관에 있어서는 서비스 무료의 원칙이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며, 학술연구에 대해서도 거의 이 원칙이 통해왔다.

도서관은 학술지원 및 시민 서비스라고 하는 공공적인 기능을 갖기 위하여 저작권상 큰 특권을 인정받아 왔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특권의 부여에 있어서 그 도서관이 학술용이건 아니면 시민용이건 간에 구별하지 않는다.

원래 도서관의 서비스는 출판계의 영리적 활동과 경쟁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 서비스의 전자화는 이러한 경쟁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용자측에서 본 경우 전자도서관에 대한 Online Access는 상용 Data Base 서비스에서의 그것과 전연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도서관서비스는 민간사업자를 압박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받아들여 미국에서는 공정사용 조항의 재검토가 논의되었다. Conference on Fair Use (CONFU)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공정사용에 대하여 「참가자는 참가자간에 일치한 결론이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일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일본에서

는 생애(生涯)학습심의회전문위원회가 공공도서관의 무료원칙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British Library는 이미 유상으로 복사 배포서비스를 영리적 출판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2-6. 저작권제도에 대한 오버라이드(Override)

네트워크환경의 출현에 의해 권리자는 copy를 판다는 것보다도 Access를 판다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권리자(출판사, 학회 등)는 계약과 copy 보호 기술에 의해 Access를 관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International Publishers Copyright Council (IPCC)은 계약에 있어서는 「copy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Access를 통제하라」고 표시하였으며 또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한 회답은 기계를 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것은 어느 것이나 다 학술분야에 있어서 재래의 관행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저작권제도에 대해서도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저작권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짜 맞추어 온 권리행사와 권리제한과의 양자간의 협정(Trade-off)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제도에 대한 「사적입법(私的立法)」에 의한 오버라이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학술정보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형식도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Text Data Base와 Fact Data Base로 분류하면, 전자는 논문의 집합체이며 그 저작권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문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Text DB는 광의로는 Fact DB로 정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것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Fact Data와 그것을 편집한 Fact DB의 저작권상의 평가이다. Fact Data는 저작물이 아니며 그 DB에 대해서도 편집에 지적기여(知的審典)가 없으면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종류의 Data와 DB도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원이다(이하 Fact Data Base를 Data Base로 약칭한다).

3-1. 공공적 데이터베이스(DB)

DB형식의 학술정보는 논문형식의 경우보다도 공

개성이 크며 따라서 공공재적(公共財的)인 특성이 강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규정은 World Data Center (WDC)의 Open Data Policy이다. 이 기관은 1957~1958년의 국제 지구관측년에 관측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학술연합이 조직한 것이다. 그 데이터는 어느 국가의 조직이나 개인(비연구자를 포함)이라도 실비로 입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금까지 Fact Data Base의 전영역(사회과학의 영역을 포함)에서 운영되어 왔다.

3-2. 공공부문의 상용화

많은 나라에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학술정보유통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특별법에 따르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참조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20세기말에 이르러 많은 정부는 재정악화에 빠져 공공적인 지원을 점차로 삭감하게 되었다. 이 영향은 현실적으로 정보생산을 하는 공공적기관의 민영화와 이에 수반하는 공공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상화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WDC의 모체)은 1990년대에 이르러 Open Data Policy를 중지하고, 기상데이터의 유상화를 제안하였다. 그 후 유럽의 여러나라와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상데이터의 유상화가 실시되고 있다. 공공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상화와 이외에도 잇달아 증가되고 있다.

3-3.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유상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지적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상(氣象)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단순한 구성을 갖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단순한 편성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작자의 지적기여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싶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구주연합(歐州聯合)은 1996년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 유사(類似)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제도이며, 독일과 영국은 이것을 저작권접권(著作隣接權)으로

제도화하였다.^{4,5)} 따라서 WIPO는 동일한 규정의 국제화를 목표로하여 1996년에 데이터베이스 조약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 연구자의 인식은 정보공유를 좋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저작권이나 유사한 권리에 대한 관심은 부정적(Negative)이다. 이 반저작권적인 발상은 우선 세계 데이터센터의 유사화정책에 대한 항의로 표명되며 이어 데이터베이스 조약안의 제안을 계기로 연구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6,7)}

우선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데이터베이스 조약안에 반대하여 「데이터의 사용에 대하여 공정한 사용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직인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CODATA 미국지부는 첫째로, Public Domain을 설정하라, 두 번째는, 과학목적의 Access를 공정하게 사용하라, 셋째는, 보호범위를 한정해라, 그리고 넷째로는, 공공적 데이터베이스의 독점을 금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정보학연락위원회도 동일한 성명을 발표하였다.⁶⁾

4. 맺 는 말

4-1. 사회·인문계 대 이공·의학계

저작권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은 영역별로 크게 다르다. 이것은 각 학회가 학술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상황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이 단체는 학회로부터 Photocopy에 관한 저작권의 위탁을 받아 복사요금의 배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학회가 이 기관에 저작권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그 학회가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 시점에서 보면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학회는 인문·사회계에 있어서는 적으며, 이공·의학계에는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 연구자의 저작권에 의식을 영역별로 볼 수가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치가 낮은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연구자가 저작권을 자신이 관리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경우이다. 후자는 특히 법학연구자 간에 강하다.

4-2. 근미래의 전망

연구자의 분야에는 정보공유라는 이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市場)에서 정보의 사유화를 보장하는 저작권제도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유의 이념은 20세기말의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의 침입과 이것을 지원하는 전자화기술의 보급에 관하여 Keiko Kurata는 (Keio의속대학도서관·정보학과) 학회가 취하게 될 저작권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3개항의 선택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 ① 학술정보를 모두 공적영역에 둔다.
- ② 학술정보의 유통을 시장원리에 위임한다.
- ③ 학술정보에 대하여 독자적 제도를 만든다.

Kurata는 이 선택을 학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Kotaro Nawa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⁸⁾

먼저 학회는 선택 ②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원리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학회는 그 안으로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시장이 과점(寡占) 경향에 있으므로 경쟁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의한 감시나 비영리 단체에 의한 실험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택 ①의 정책도 사실상 (defacto)의 표준으로서 일정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회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택 ③에서는 시장원리에 휘말리는 학회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미래에는 선택 ②와 선택 ①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 항목의 경향이 교착(交錯)할 것이며 이 교착 가운데에서 21세기 초두에 있어서 학회의 저작권정책과 연구자의 저작권의식은 같이 불안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Culliton BJ. Authorship, data ownership examined. Science 1988; 242(4879): 658.
- 2) Schauder D. (福島 勳 他譯) 専門論文の電子出版: 大學研究者の態度と學術情報流通産業に對する意味, 情報管理 1995; 38(1): 33-34, 38(2): 137-148, 38(3): 223-245.

- 3) Ginsparg P. First steps towards electronic research communication. *Computer in Physics* 1994; 8(4): 390-396.
 - 4) 小野寺夏生. ファクトデータベースの著作権. 情報社会の知的所有権. 科学技術振興事業団 編, 1998. p. 18-28.
 - 5) 苗村憲司. データベースの新たな保護制度, 情報の科学と技術 1998; 47(8): 460-466.
 - 6) 日本學術會議情報學連絡委員會. データベースに関して新たに提案されている知的所有権について, 1998.
 - 7) 慶應義塾大學圖書館・情報學科. 電子情報環境下における學術情報流通と著作権. 慶應義塾大學學事振興資金研究報告書, 1998.
 - 8) 名和小太郎. 學術情報の電子化. 変わりゆく情報基盤. 關西大學出版部, 2000. p.272-298.
-